

## 경운대학교 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

**제1조(목적)** 경운대학교의 대학정보화사업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운대학교 정보화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2조(조직)**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촉한다.

1. 위원장은 전산정보센터장이 된다.
2. 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3.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전산정보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3조(임기)** 위원장의 임기는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제반 사항
3. 정보화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
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

**제6조(수당)**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위원회의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전산정보센터에서 관장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